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지방공무원복무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없 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0. 00. ~ 0. 00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. 다만, 전환한 연가를 다음 달로 이월
- 저축한 경우는 제7조의10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. 다만, 전환한 연가를 다음 달로 이월·저축한 경우는 제7조의10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58